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284063(본소), 2020가단284070(반소) 판결
[공사대금 · 공사대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담

담당변호사 고아연

피고(반소원고) B

변론 종결 2021. 3. 17.

판결 선고 2021. 4.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1.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8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9,007,8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 2019. 3.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85,000,000원을 지급받고 논산시 C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신축한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9.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9. 피고에게 "공사대금 4,000만 원 정리 좀 해줘라. 내가 너무나 힘들다. 부탁 좀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 · 피고의 날인이 된 계약서 원본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185,0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은 203,500,000원(= 185,000,000원 × 1.1)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14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500,000원(= 203,500,000원 -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원고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185,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9,007,862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로 소멸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의 채권액인 19,007,862원(= 59,007,862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9. 4. 21. 상량식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축하객들이 지급한 축의금을 모두 원고에게 보관시켰다. 그 금액은 총 7,000,000원이 넘는데 원고가 현재까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사 진행시 피고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산재보험료 1,504,680원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1,504,680원도 반환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저금리가 적용되는 농가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충당할 예정이었는데, 원고가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 하여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일반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농가주택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대출받은

7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기간인 30년 동안추가로 31,080,000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31,08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또한, 농가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논산지에서 측량비 보조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이 사건 공사 범위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철거공사비용을 부담하면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으로 2,105,000원(= 장비대 3일치 1,500,000원 + 폐기물처리비 60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이 사건 공사대금 185,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16,818,182원이 포함되어 있는 데,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16,818,182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185,000,000원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전 문자메시지로 58,500,000원이 아닌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3. 10.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 등 채권을 가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 ① 을가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상량식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상량식 축의금 7,000,000원을 보관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2의 나의 1항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1,504,68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2의 나의 2항 주장은 이유 없다.
- ③ 을가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농가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일반 대출을 받은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농가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제2의 나의 3, 4항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에게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④ 을가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사 범위에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제2의 나의 5항 주장은 이유 없다
- ⑤ 이 사건 공사대금 185,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6,818,182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185,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제2의 나의 6항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59,007,862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혜선